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사업 예산 기준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액	비고
강사비	[일반 Ⅲ] 이하	[일반 Ⅲ] – 1시간 이내: 100,000원 – 초과 매 시간당: 50,000원	– 강의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– 사회적 관계망 모임 참여자에게는 강사료 지급 불가 – 강사이력서, 강의 계획서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제출 – 기타소득세 정산을 위해 강사비는 자치구센터에서 이체
식비	– 1인	8,000원	– 활동 사진, 활동보고서 – 식비 및 다과비는 **전체 사업비 50% 이내** ※ 예외: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재료비로 인정 가능 **※ 비대면 시 사용 불가**
다과비	– 1인	4,000원	
시외 교통비	– 운임비	실비	– 시외/고속버스, 철도, 항공 운임만 해당 – 현지 택시, 시내버스는 미포함 – 교통카드, 유류비 지급불가
숙박비	– 1인	20,000원	
재료비	– 재료비	실비	– 구입물품 사진
교육비	– 교육비	실비	–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며, 참여자 역할에 따라 필요시 지원
체험비	– 체험비	실비	
대여비	– 대여비	실비	– 대여물품 사진
대관비	– 대관비	실비	– 대관 장소 사진 – 이체 시: 사업자등록증, 계좌이체확인증 제출
인쇄비	– 현수막 제작 – 교재 제작	실비	– 인쇄물사진, 견적서, 홍보인쇄물 시안
도서구입비	– 도서구입비	실비	– 구입도서 사진 – **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** ※ 예외: 독서모임 등 도서구입이 교육재료비로 인정되는 경우
보험비	– 보험비	실비	– 여행 및 탐방 시 상해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– 보험증권사본, 계좌이체확인증
입장료	– 입장료	실비	– 입장권, 참석자명단
우편료	– 우편료	실비	– 자치구센터 자료 제출 시
지원 불가 항목	공공요금	– 전기세,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등	
	통신요금	– 국내외 전화요금, 핸드폰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	
	기자재 구입비	– 사회적 관계망 모임의 평상 시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구입비	
	경상 운영비	– 위 항목 이외에도 모임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 (사무실 운영경비, 급여 등)	